

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

신 청 인 〇〇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신청인(채권자) ◇★★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신 청 취 지

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〇〇타경〇〇〇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매각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- 1. 신청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자로서 정당한 이해관계인임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각기일을 통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.
- 2.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첨 부 서 류

1.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통

제출법원	집행법원	제출기간	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(민 왕 해법 제120조제2항)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 련 법 규	민사집행법 제120조, 제121조
비용	·인지액 : 없음(대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		
기 타	 인지액: 없음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・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①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②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③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④최고가매수신고인,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제108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⑤최저매각가격의 결정,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⑥천재지변, 그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⑦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(민사집행법 제121조). ・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함(민사집행법 제122조). ・매각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허가에 대한이의사유가 됨(대법원 1999. 11. 15.자 99마5265). ㆍ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①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②채무자 및 소유자 ③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④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※가압류채권자(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다53240 관결), 가처분채권자(대법원 1994. 9. 30.자 98다53240 결정)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님. 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